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28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물류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6. 30.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 중 별지2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 보관창고업, 국내물류업, 국제물류업 및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 16 [redacted]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701 창고용지 16,6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3. 12.과 2012. 8.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29,234.99㎡의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4. 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이하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과 합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한 취득세 등도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류창고 중 17,327㎡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들(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867,018,350원, 지방교육세 57,625,400원, 농어촌특별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44,054,220원 합계 968,697,970원을 추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5. 24. 가산세 계산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별지1과 같이 위 추징액을 감액(이하 감액된 2014. 6. 9.자 추징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임차인들이 임차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추징액은 별지3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1~2, 갑2~8, 갑10의1~2, 갑12, 을3~5, 을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

① 물류사업에는 물류시설 임대업이 포함되므로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물류창고의 일부를 임대한 것도 원고가 직접 물류사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물류창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하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은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사용 방법에 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물류사업을 하게 하는 경우도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2) 피고

① 이 사건 감면규정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이 사건 추징규정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물류창고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신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물류창고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물류창고에 관하여 2013. 4.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 5. 16.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원고는 2013. 1. 31. 위탁자 원고,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석남동지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임대차 등)

① 신탁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임대차확인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보증금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인수·인계한 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수탁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준조세, 관리비, 공공비용, 소송비용, 법률자문료, (중략)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하며, 수탁자는 본항과 관련된 채무(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이 사건 임차인들과 이 사건 건물 중 17,327㎡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현황은 별지4 기재와 같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물류창고 및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⑤ 원고는 2013. 4. 1. 주식회사 티아이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리업무의 내용은 '1) 물류창고 내의 기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전감시, 순찰, 일상점검, 측정 및 안전관리 업무, 2) 공용부문 청소 및 환경관리, 5) 침해행위나 파괴행위의 예방저지와 화재, 도난 등 재해 발생시 수습, 인명보호에 대한 시설점검 업무' 등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갑8, 갑12, 갑17의1~3, 5~8, 갑22, 을10의1~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주식회사,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주식회사, 주식회사 [redacted]의 임차 부분

위 인정사실, 갑14, 을10의1~4, 10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류창고 중에서 원고가 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한 부분은 원고가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 분류 · 포장 · 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류창고업의 운영형태는 창고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수시로 입 · 출고하여 보관하는 형태의 화주에게 물류창고를 임대하고 화주가 직접 임차한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이른바 '임대창고' 방식과 창고업자가 단기간에 걸쳐 화물을 단순히 보관하기를 원하는 화주와 직접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이른바 '수탁창고'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1], 임대창고 방식과 수탁창고 방식의 창고업 운영이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위 임차인들과 이 사건 물류창고 중 창고와 그에 부수하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티아이와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

1)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87 판결, 대법원 2016두37232 결정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창고 내의 기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전감시, 순찰, 일상점검, 안전관리를 하였으며, 이 사건 물류창고에 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이 사건 물류창고 중 위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부분은 임대창고 방식으로 물류창고업 운영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실제 원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바 있다).

③ 원고는 위 임차인들과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물류창고를 물품저장 및 그에 부수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업무의 용도로 임차하며, 전술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용도제한 특약을 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의 용도를 물류사업용으로 제한하였다.

④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물류사업'에는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이 포함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물류시설운영업'에는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등의 창고업이 포함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물류창고에서 수탁창고 방식으로 영위한 창고업은 물론 위 임차인들에게 임차하여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한 창고업도 물류정책기본법이 정한 물류사업에 해당한다.

㈏ 주식회사 [redacted]에스, [redacted]인터네셔널 주식회사, [redacted]관세사무소, [redacted] 주식회사, 주식회사 [redacted]의 임차 부분

위 인정사실, 갑16의3, 5, 갑18의5~8, 을10의5~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류창고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에서 원고가 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한 부분은 원고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물류창고 중 위 임차인들이 임차한 부분은 모두 면적이 31~53㎡에에 불과한 사무실이다. 원고는 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무실의 용도 혹은 물류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특약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기록상 [redacted]관세사사무소는 물류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회사 [redacted]도 물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다.

③ 주식회사 [redacted]는 원고에게 물류업무를 위임하였고, 원고가 주식회사 [redacted]에스에게 창고 보관 및 입출고 업무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redacted]와 주식회사 [redacted]에스가 원고와의 물류업무와 관련하여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이 법원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redacted]아, 주식회사 [redacted]에스가 원고와의 업무 위탁관계로 인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위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발행한 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④ [redacted]인터네셔널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물류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물류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임차인들이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실제로 물류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이 법원은 원고에게 위 임차인들이 입주한 목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주식회사 [redacted]에스, [redacted]인터네셔널 주식회사, [redacted] 관세사무소, [redacted] 주식회사, 주식회사 [redacted]가 임차한 사무실 부분에 관한 별지2 기재 취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물류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신탁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분사유의 추가 가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원고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이 사건 토지 및 물류창고를 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이 추징되어야 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물류창고를 임대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추징한다는 기존의 처분사유로 인한 처분과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물류창고를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징규정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추징규정 중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삼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위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원고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서 원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이 사건 토지 및 물류창고를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위 신탁계약에 따르더라도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물류창고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관리행위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바, 이를 매각·증여와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신탁계약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물류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차인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물류창고 중 창고를 임대하여 물류사업을 직접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홍윤하

판사 심우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별지1

(단위: 원)

처분일	세목	토지	건물	소계
2014. 6. 9.	취득세	439,446,880	423,649,200	863,150,660
	지방교육세	36,916,590	20,314,470	57,231,060
	농어촌특별세	18,458,270	25,393,110	43,851,380
	합계			964,233,1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별지2

(단위: 원)

처분일	세목	토지[2]	건물[3]	소계
2014. 6. 9.	취득세	4,845,300	4,671,070	9,516,370
	지방교육세	408,630	225,090	633,720
	농어촌특별세	204,310	281,380	485,690
	합계			10,635,780

2) 별지3 중 토지 추정세액 정당 산출내역의 순번 5 내지 9의 각 세목별 합계액의 합계
3) 별지3 중 건물 추정세액 정당 산출내역의 순번 5 내지 9의 각 세목별 합계액의 합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별지3

티제이물류 가산세 등 재산출내역(납부지연일 수정)

- 건물 면적 : 2823.99㎡　　건물 신고 취득세표준액 : 20,413,754,336원
- 토지면적 : 1661.4㎡　　토지 신고 취득세표준액 : 14,822,479,150원

(가) 건물 추정세액 점당 산출내역

구분	임차인	임차일자		납부지연일 계산		표준금액	취득세					건물분 추정세액 점당 산출내역	지방교육세			납부지연일수
		확정일자	주민등록 전입일	계약 만료일	경과일수	건물	계	부가세	무실고기산세 (본세×20%)	납부지연산세 (본세×0.0003×지연일수)	본세	농특세	계	납부지연산세 (본세×0.0003×지연일수)	계	납부지연산세 (본세×0.0003×지연일수)
	총 계	17,327				12,086,828,194	459,407,060	423,648,200	338,787,140	67,753,380	17,128,680	25,421,040	24,197,810	1,223,430	20,338,820	878,740
1	삼양사	3,173	2013-05-24	2014-06-09	382	2,215,593,113	90,443,490	81,553,310	62,036,600	12,407,320	7,109,390	4,938,980	4,431,180	507,810	3,951,190	406,250
2	대림산업㈜	1,472	2014-02-04	2014-06-09	126	1,027,845,279	39,463,560	35,623,480	28,779,660	5,755,630	1,087,870	2,139,380	2,055,680	77,700	1,708,710	62,160
3	제리서	4,087	2014-02-04	2014-06-09	126	2,853,806,824	109,570,360	98,906,380	79,906,590	15,981,310	3,020,480	5,923,350	5,707,610	215,740	4,738,880	172,500
4	이룸센터	6,425	2014-04-01	2014-06-09	70	4,406,349,118	169,889,290	153,379,290	125,817,770	25,123,550	2,637,970	9,161,110	8,972,690	188,420	7,328,880	150,740
5	티제이에스	31	2013-06-25	2014-06-09	350	21,646,188	877,020	780,830	606,090	121,210	53,530	47,830	43,290	4,540	38,260	3,630
6	뉴코인터내셔널	33	2013-07-16	2014-06-09	327	23,042,726	928,580	837,510	645,190	129,030	63,290	50,600	46,080	4,520	40,470	3,610
7	케이앤코회사무소	53	2014-02-27	2014-06-09	103	37,008,018	1,412,790	1,275,470	1,038,220	207,240	32,010	78,290	74,910	2,280	61,030	1,820
8	에이전지소	39	2013-08-01	2014-06-09	313	27,232,313	1,093,820	988,580	762,500	152,500	71,590	59,570	54,460	5,110	47,660	4,090
9	탑코리아	31	2013-08-21	2014-06-09	293	21,646,188	865,330	780,570	606,090	121,210	53,270	47,090	43,290	3,800	37,570	3,040
10	티엔씨	1,983	2013-09-26	2014-06-09	257	1,384,658,412	54,682,790	49,513,710	38,770,430	7,754,080	2,889,200	2,982,820	2,769,310	213,510	2,386,260	170,8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나) 토지 추정세액 정당 산출내역

구분	임차인	임차면적	납세자현황 계산			임대료표	종부결정계	토지분 추정세액 정당 산출내역										
			계산일	종료일(부과일)	지연일수	토지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납부불성실(본세×0.00025×지연일수)	
								본세	부산고가산세(본세×20%)	납부불성실(본세×0.00025×지연일수)	본세	부과	계	본세	부과	계		
	총 계	17,327				8,794,990,043	484,821,740	351,989,600	70,279,870	17,787,410	18,458,270	17,568,930	889,340	35,196,800	1,758,690	36,955,490	1,778,690	
1	삼양사	3,173	2013-05-24	2014-06-09	382	1,608,747,817	85,353,020	64,349,910	12,869,980	7,374,490	3,598,210	3,217,490	380,720	6,434,990	737,440	7,172,430	737,440	
2	태평양씨엠씨	1,472	2014-02-04	2014-06-09	126	746,321,079	41,599,010	29,552,840	5,870,560	1,128,430	1,549,060	1,492,640	56,420	2,985,280	112,840	3,098,120	112,840	
3	제일씨	4,087	2014-02-04	2014-06-09	126	2,072,156,422	115,499,490	82,886,260	16,577,250	3,133,100	4,300,980	4,144,310	156,650	8,288,620	313,300	8,601,920	313,300	
4	이엘씨티	6,425	2014-04-01	2014-06-09	70	3,267,548,550	179,054,430	136,301,980	28,060,390	2,738,340	6,851,800	6,515,090	136,810	13,030,180	273,630	13,303,820	273,630	
5	티제이에스	31	2013-04-25	2014-06-09	350	15,717,359	924,620	628,660	125,730	66,010	34,790	31,480	3,300	62,960	5,600	69,460	5,600	
6	부경인터내셔널	33	2013-07-18	2014-06-09	327	16,731,382	976,980	669,260	133,850	65,650	38,740	33,460	3,280	66,920	6,580	73,480	6,580	
7	케이엠제철사무소	53	2014-02-27	2014-06-09	103	26,871,614	1,489,250	1,074,870	214,970	33,210	55,400	53,740	1,660	107,480	3,320	110,800	3,320	
8	에이전건자소	39	2013-08-01	2014-06-09	313	18,773,452	1,153,140	790,940	158,180	74,260	43,250	39,540	3,710	79,080	7,420	86,510	7,420	
9	한코리아	31	2013-08-21	2014-06-09	293	15,717,359	912,250	628,690	125,730	55,260	34,190	31,480	2,760	62,960	5,520	68,480	5,520	
10	티엠씨	1,983	2013-09-26	2014-06-09	257	1,005,404,009	57,857,550	40,216,160	8,043,230	3,100,680	2,165,830	2,010,800	155,030	4,031,610	310,060	4,331,670	310,0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단위 : 원, 세액 및 추가 과세 세목 산출)

| 구분 | | 임차인 | | 출퇴과불가 | 산출내역 | |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별지4

주식회사 티제이물류 물류창고 임대현황

(단위 : ㎡)

계약사항			
임차인	구분	층수	임대면적
[redacted]사	사무실	2층	108
	창고-상온	1층	2,403
	창고-냉장	1층	661
	소계		3,173
[redacted](주)	사무실	2층	121
	창고	1층	1,341
	위험물창고	외부	10
	소계		1,472
(주[redacted]	창고	2층	4,087
[redacted](주)	사무실	1층	134
	사무실	3층	103
	창고	1층	2,346
	창고	2층	3,842
	소계		6,425
(주)[redacted]	사무실	2층	31
[redacted]	사무실	3층	33
[redacted]	사무실	3층	53
[redacted]	사무실	3층	39
[redacted]	사무실	2층	31
(주[redacted]	창고	3층	1,983
총계			17,32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해상화물운송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항공화물운송업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9

		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화물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물류장비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해운부대사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항만운송관련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종합물류 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끝>